

# 한국체육대학교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 본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를 근거로 각 부서의 비공개 대상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시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 각 정보공개 청구건별 비공개 여부는 해당 부서에서 개별 판단될 사항을 알려드리며, 향후 사회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부서	세부기준		비고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민원처리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통계관리	○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등 [통계법 제33조]	
	소송	○ 공판 전 소송에 관한 제반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비밀누설 금지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 [국가공무원법 제60]	
교무과 총무과	징계	○ 징계위원회 회의 내용 [공무원징계령 제20조 및 제21조, 교육공무원징계령 제18조 및 제19조]	
교무과	장학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총무과	공직자재산 등록관리	○ 공무원 재산등록 사항, 금융거래자료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보건진료소	의료	○ 진료 및 간호업무, 환자기록, 감염예방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 불가 [의료법 제19조, 제47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부서	세부기준		비고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련	○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을지훈련, 재난대응훈련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총무과	보안업무, 비상계획	○ 비밀기록물,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 직장예비군·민방위대편성표, 총무계획 등 보안과 관련되는 정보	
학술정보원	정보보호	○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장비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의 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부서	세부기준		비고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공익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법 부정행위 등의 접수 및 처리 내용</li> <li>○ 신고자 및 통보자 인적사항</li> </ul>	
대학원 교무과	학위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수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총무과	청사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순찰·경비(방호), CCTV위치 등에 관한 정보</li> <li>○ 방재·방범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정보</li> </ul>	
시설과	시설설계, 도면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내 주요시설 설계도·구조 등에 관한 정보 위험물 저장 위치와 관련된 정보</li> </ul>	
체육과학 연구소	연구, 실험실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체에 유해한 시약의 정보</li> <li>○ 마약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관한 정보</li> </ul>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부서	세부기준		비고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소송, 행정심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 중인 재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는 정보 - 재판관련 소장, 준비서면, 사실조회서, 답변서 등</li> </ul>	
교무과 총무과	수사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 등이 기록된 문서 등의 정보로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수사방법 또는 수사내용이 기록된 조서 또는 교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등</li> </ul>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9조제1항제5호]

부서	세부기준		비고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감사뿐만 아니라 내부감사를 포함하며, 감사원의 감사 외에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에 대한 감사, 중앙 부처가 소관업무에 대해 실시하는 타 부처 감사</li> <li>○ 감사, 조사, 단속, 직무감찰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원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시감사계획, 감사기법 개선안 등</li> </ul> </li> <li>○ 감사·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각종 부패현안, 개인비위자료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li> <li>-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li> <li>- 공무원전용 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li> </ul> </li> </ul>	
공통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li> <li>○ 회의내용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li>○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회 심의 의결을 위한 내부의견 표명자료</li> <li>- 위원회 회의록 내 발언자 성명</li> </ul> </li> <li>○ 각종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인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안건</li> </ul>	
	계약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li> </ul>	
	의사결정 과정 내부검토 과정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사안에 대하여 의사결정 과정 중에 있거나 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공고 전의 시험 실시계획</li> </ul> </li> </ul>	
교무과 훈련학생총괄팀 대학원 각 학과	시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선발을 위한 입시, 학내 학업성적 산출을 위한 시험에 관한 정보로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li> </ul>	
교무과 총무과	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 인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채용, 임용, 정기(수시)인사, 심사, 인사교류, 교육훈련, 휴직근무, 역량평가 검증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단계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인사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li> <li>○ 승진심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승진심사 회의록 등)</li> <li>○ 징계의결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징계위원회 회의록 등)</li> <li>○ 근무성적 평정결과 등</li> </ul>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법 제9조제1항제6호]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부서	세부기준		비고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관한 정보 및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li> <li>○ 민감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li> </ul> </li> <li>○ 개인의 생활에 관한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의 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개인의 주거에 관한 정보, 개인의 자산에 관한 정보, 학교교육에 관한 정보 등</li> </ul> </li> <li>○ 교직원 등의 개인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등</li> <li>-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li> <li>※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li> </ul> </li> </ul>	
	위원회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위원회 위원의 개인식별정보 및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등</li> </ul>	
	민원 및 공익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종 민원 및 공익제보 신고인, 이해관계인(피신고인 등), 참고인, 청구인 등 개인의 인적사항</li> </ul>	
교무과 총무과	인사기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li> </ul>	
교무과 총무과	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li> <li>○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등</li> </ul>	
교무과 총무과	징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의 징계내역 등 징계혐의 관련 문서, 비위면직자의 인적사항 및 비위면직사항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정보</li> </ul>	
총무과	급여, 복무관리, 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직원의 급여, 복무, 수당(시간외 수당, 출장비 지급현황), 연말정산 등</li> <li>○ 맞춤형복지 가입과 관련한 특정인의 개인정보</li> </ul>	

부서	세부기준		비고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총무과	공무원연금, 4대보험	○ 공무원연금 및 4대 보험과 관련한 개인정보	
총무과	사회복무요원 관리	○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총무과	국유재산	○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련하여 특정 개인의 정보가 포함된 정보	
대학원, 훈련학생 총괄팀	학생징계	○ 학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한 징계내역 등 징계혐의 관련 문서 ○ 징계대상자 및 관련 제3자의 인적사항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정보	
보건진료소	보험관리	○ 보험 가입과 관련한 학생들의 개인정보 및 명단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청구서와 진단서,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 ○ 보상과 관련한 심사 또는 손해사정 결과, 합의서, 보상내역 등	
재단법인 발전기금	발전기금	○ 발전기금 납부자 및 수혜자의 개인정보 ※ 다만, 정보 공개에 동의한 납부자는 성명과 납부 금액을 공개할 수 있음 ○ 발전기금 수입 및 지출 증빙서류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 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법 제9조제1항제7호]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부서	세부기준		비고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공통	용역관리	○ 각종 용역수행 업체의 기술, 신공법, 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산학협력단	기술이전	○ 산학협력에 의해 생산된 기술이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산학협동 유관업체와의 상호교류 정보 등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 이전 관련 정보	
	연구과제관리	○ 산학협력에 의해 생산된 기술이나,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산학협동 유관업체와의 상호교류 정보 등 대학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이전 관련 정보	
	지식재산권관리	○ 각종 연구과제 관련 정보 중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관련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부서	세부기준		비고
	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총무과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취득 및 처분	○ 국유재산 매각 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